

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계획

농림축산식품부

1. 지원목적

- AI 발생 이후 소비 감소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의 출하 및 판매 지원으로 산업안정화 도모

2. 지원계획

-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, 품목단체(한국계육협회, 한국오리협회)
- 지원대상 : 일반농가(비계열, 입식제한) 및 계열화사업자
- 지원조건 : 연리 1~3%, 2년거치 3년상환(2년 1%, 이후 3년 3%)
- 재원 : 일반회계 농업 자금 이차보전사업(긴급경영안정자금)
- 지원내용 : 원료구입비, 인건비,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
- 지원규모 : 800억원
- 지원한도액
 - 1) 일반농가(비계열, 입식제한) : 한도 20백만원
 - 산출방법 : 사육규모 × 1,500원/마리
 - 2) 계열화사업자 : 한도 닭 3,000백만원, 오리 2,000백만원
 - 산출방법 : [일 도축실적 × 15일 × 단가(닭 1,500원/수, 오리 2,500원/수)] + [일반농가 비축물량 × 단가(닭 3,500원/수, 오리 7,000원/수)]

- 한도의 추가지원 : 한도액의 20%범
위내
- * 일반농가 비축물량 추가시 한도의 추가 지
원

화사업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
부서(농업금융정책과, 시·도, 대출취급
기관(농협), 품목단체)에 지원대상자와
지원금액을 확정·통보

3. 지원방법

- (일반농가) 시장·군수에게 사업계획을
수립하여 자금지원신청
 - 시장·군수는 사업계획 검토후 시·
도지사에게 지원요청
 - 시·도지사는 시장군수 신청을 검토
하여 농식품부에 지원요청
 - * 비계열 : 해당 품목단체(대한양계협회, 한국
오리협회) 확인을 받아 제출
 - * 입식제한농가 : 시장·군수가 확인(전년도
출하실적 및 입식계획, 휴지기간 경과 여부
등을 확인)
 - * 휴지기간 : 육계 25일, 오리 20, 토종닭 60
일
- (계열화사업자) 해당 품목단체(한국오리
협회, 한국계육협회)에 사업계획을 수립
하여 신청
 - 해당 품목단체장은 계열화사업자의
사업계획을 검토(농가수수료 지급 계
획, 일반물량 비축량)을 검토하여 농
식품부에 자금지원 신청
 - * 비계열농가 물량은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
농가를 참고
- 농식품부(축산경영과)는 농가별 및 계열

4. 기타사항

- 경계지역 등에 자율입식 결의 사항을 위
반하여 입식하는 경우 지원 제한
- 일반농가 자율비축 미이행시 경영안정
자금 회수 조치
 - 계열화사업자 경영안정자금 사업계
획에 포함된 일반농가 물량 비축 미이
행시 즉시 자금 회수 